

목 차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2026. 5.

화성도시공사 경기타운부

I 일반지시서

1. 과업의 개요
2. 일반사항
3. 용역의 착수
4. 용역시행
5. 관 리

II 특별지시서

1. 과업내용
2. 과업의 수행방법
3. 설계내역 사항
4. 특별사항
5. 기타사항

I . 일반지시서

1. 과업의개요

1.1 과업명 : 2026년도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1.2 과업배경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으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1.3 과업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안전, 수질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1.4 과업대상 :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남측)

1.5 과업기간

가. 용역기간 : 2026. 6. 26.(금) ~ 2026. 8. 23.(일)

- 2026. 6. 26.(금) : 안전요원 사전 교육
- 2026. 6. 27.(토) ~ 2026. 6. 28.(일) : 시범 운영
- 2026. 7. 04.(토) ~ 2026. 8. 23.(일) : 정식 개장

나. 운영기간 : 2026. 6. 26.(금) ~ 2026. 8. 23.(일)

다. 철거일 : 2026. 8. 24.(월)

라. 관리시간 : 08:00 ~ 19:00(점심시간 휴장 12:00 ~ 13:00)

마. 운영시간 : 10:00 ~ 17:45(이용시간 운영 45분 / 휴식 15분)

바. 휴장일 : 매주 월요일(7.6./7.13./7.20./7.27./8.3./8.10./8.17.) (7일)

방학 (7/27 월)전까지 평일기간 미운영 17일

※ 과업기간, 운영시간, 휴장일 등은 발주처 필요시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

1.6 과업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별지시서에 의한다.
- 나.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토록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 한다.**
- 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화성도시공사**를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 **2026년도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 라. 본 지시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현장 용역감독을 말한다. 감독관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마. 본 용역은 그 용역일체를 계약서, 설계도서 및 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특별)지시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수정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착수

3.1 현장대리인(작업반장)의 지정

- 가. 본 용역에 적합한 자를 상주하게 하고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나.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 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2 제출서류

-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 10일전까지 착수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현장대리인 계, 용역도급내역서, 물놀이장 운영관리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물놀이장 운영관리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4. 용역시행

4.1 도급자의 의무

- 가. 본 용역은 설계서, 일반(특별)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다. 도급자는 매일 물놀이장 관리사항을 일지로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계약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바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시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 사. 일반(특별)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한다.**
- 아. 본 사업은 화성시민과 화성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도급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자.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특별작업수당은 도급자측에서 신축적으로 시행한다.

4.2 노무관리

-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나.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다. **물놀이장 운영 요원은 근무 시 안전요원이 표기된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반드시 착용한다.**

4.3 설계변경

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1) 당초 물놀이장 운영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2) 물놀이장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 3) 민원발생에 의해 물놀이장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5. 관 리

5.1 용역관리

-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도급자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용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일시중지

-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장마, 태풍 등 기후이상으로 시설물 임시 철거 및 복구 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2)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3) 용역 안전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4)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 5)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 6) 도급자의 운영용역 방법 또는 운영이 미숙하여 조잡한 용역이 우려될 때
- 7)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운영시간

- 1) 물놀이장 운영시간(평일, 토, 일, 공휴일 등)은 10:00 ~ 17:45 로 하고,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단축,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작 전 개장 준비 및 청소, 운영 종료 후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장시간 전 2시간 준비 시간을 갖는다)**
- 2) 물놀이장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 1) 도급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2) 도급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성실히 완성한다.
- 3) 관련 및 별도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바. 용역용 재료의 관리

- 1)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2)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한다.

5.2 기록관리

가. 용역기록

- 1)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기록사진, 준공도

- 1) 공정사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동일구도에서 촬영한다.
- 2)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플래카드 게시, 안전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3) 공정사진과 용역기록사진은 각 공정별로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파일로 준공 시 감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4) **물놀이장 운영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3 기성금액 청구 및 검사

가. 본 용역비 지급은 총 도급금액 범위에서 기성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착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도급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용역비에 대한 월별 기성금액 지급 신청은 감독관이 확인한 투입인원현황, 운영관리용역일보, 근로확인내역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외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발주처는 7일 이내에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득하고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대가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II. 특별지시서

1. 과업내용

1.1 용역 수행사항

- 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자들의 적정(안전) 이용 인원 설정, 통제 등 질서 관리
- 나. 수질관리, 물놀이장 이용 안내
- 다. 환경정비 및 청결 유지(수조 및 주변 청소 등)
- 라.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물놀이장 세밀청소(매주 월요일 휴무 시)
- 마. 물놀이장 관련 민원처리 등
- 바. 놀이시설, 기계·전기시설, 기타 시설 유지관리
- 사. 자연재해 발생 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 아.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1.2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자는 용역 착수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 1항에 각 호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한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물놀이장 운영 1주 전까지 자격증 증빙 또는 교육이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전 관리자는 신체상의 질병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서류 등)

다. 안전관리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가.호의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라. 안전관리자는 과업 기간 내 용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3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으로 관리한다.

나. 물놀이장 이용 시 물놀이에 적합한 복장으로 입장하도록 유도 한다.

※ 대형 튜브, 보트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다. 주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물놀이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표(사본)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 운영시간 전후 물놀이장내 청결을 유지한다.

마. 유행성결막염 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 한다.

바. 매일 잔류염소 최소0.4 ~ 최대4.0mg/L을 상시 유지토록 한다.

사. 놀이터 내 물은 매일 교환하여 깨끗한 수질을 제공하며, 저수조 물은 금요일 운영 종료 후 퇴수하고 화요일 운영전 다시 채운다.

1.4 시설물관리

가.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 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나.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를 실시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마.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바. 물놀이장 개장 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 및 소독,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여 물놀이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후송조치 할 수 있도록 구급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신의성실을 다한다. 즉시 발주처에 유선보고를 한다.
- 2) 응급의료품(도급자 준비)을 항상 구비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한 긴급상황조치 교육 및 예행연습을 통해 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수조 외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한다.

5) 물놀이장 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6) 물놀이장의 안전관리인원(2명 이상 배치)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의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7) 물놀이장 운영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 근무인원을 투입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8)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9)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등 음식은 수질 오염 원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10) 우기 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

11)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안전요원)”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확인요망)

12)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13)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감독관(발주처 사무실)에게 보고한다.

14)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별지1 ※ 협의 후 변경 가능]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운영관리 세부사항 일체)

16) 물놀이장 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우천 및 풍랑 등)가 발생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속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7) 현장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 이용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별지2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8)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물품과 간이시설의 품질과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기준

1)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2)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물놀이시설 미 개장 및 미점검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3. 설계내역 사항

3.1 설계내역서에 있는 각 공종당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라 함은 물놀이장 운영, 수상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 물놀이장 내부청소, 물놀이장 및 인근 환경 정비, 물놀이시설 파손 점검 및 수선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1) **시설물 관리**라 함은 물놀이장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련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검사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는 등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총체적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천재지변 외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사후 정산 처리하며,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II. 특별지시서 - 2. 과업내용 - 2.3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놀이장에 대하여 상시 조망·순찰하여 이용자의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3) **운영**이라 함은 운영 시간 내 물놀이장 이용객에게 안전제공 및 물놀이 시설을 원활히 운영함을 말한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수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구조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물놀이시설 전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고장 및 파손이 있을시 즉각적으로 수리(수선)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환경정비**라 함은 물놀이장 인근 각종 쓰레기 및 흙, 모래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방지,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사업장 인근 공원 및 운동장의 쓰레기 발생 시 즉시 수거하여 벌레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의 발생 시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그 범위는 「물놀이장 사업장 전체 외곽 경계로부터 부대시설(샤워기, 음수대, 탈의장, 세척대 등)」로 하며 상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고, 범위는 쓰레기 발생 등 환경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순찰**이라 함은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근무 활동으로써 화성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 일체에 대한 관리 및 순찰로 운영기간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 보호 관리와 민원발생 시 즉각 처리를 말한다

4. 특별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2026년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용역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 조망 할 수 있는 관리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의료비품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를 의해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물놀이장 이용 수칙

1. 물놀이장 이용 시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수영복, 수영모, 아쿠아슈즈(권고)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3.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 유아는 반드시 방수용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음식물, 튜브, 물총 및 위험한 물건은 반입하지 않습니다.
5.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지 않습니다.
6. 눈병, **피부병 또는 피부질환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물놀이장 내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8. 유모차, 자전거, 킥보드는 물놀이장 내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9.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 갑니다.
10.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물놀이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제89조의3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2. 관리 기준

-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응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3. 용수관리

교체일 및 시간	용수교체량(m³)	교체일 및 시간	용수교체량(m³)

4. 소독

투입일 및 시간	소독방법(소독제 투입량*)	투입일 및 시간	소독방법(소독제 투입량)

*소독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소독제 투입량 기록

5. 여과기 가동(여과기 설치 시)

가동일 및 시간	총 가동시간	가동일 및 시간	총 가동시간

6. 저류조 및 시설 청소

청소 일자	청소 대상 및 내용	청소 일자	청소 대상 및 내용

- 2026년 화성종합경기타운 물놀이장 놀이터 - 만족도 설문조사

화성종합경기타운 어린이 물놀이장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좋은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응답자 특성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 귀하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향남 ② 봉담 ③ 동탄 ④ 병점 ⑤ 화성기타 ⑥ 타 시
- 귀하께서는 물놀이장 운영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인터넷 등, ② 언론보도 등, ③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④ 지인의 소개, ⑤ 기타
- 내년에도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면, 재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만족도 항목

해당되는 곳에 √ 체크 해 주세요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물놀이장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2. 부대시설 사용에 만족하십니까? (천막쉼터,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⑤	④	③	②	①
3. 물놀이장 수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4. 물놀이장 운영안내 및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5. 수돗물을 사용한 수질에 만족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6. 안전요원의 업무수행에 만족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3. 만족했던 점 (좋았던 점)

4. 아쉬웠던 점 (불편했거나 변경·추가 되어야 할 점)

사고발생 보고서(즉시보고)

사고개요

- 일 시 : 2026년 월 일 요일 : 분경
- 공 원 명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명, 물적피해 ()명
- 사고원인 :

사고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비 고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사고내용(서술식)

조치사항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조치
-

출근부

기관					놀이터 명							성명 (연락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일자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무시간																
초과/휴일 근로시간																
근로자																
확인자																
일자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무시간																
초과/휴일 근로시간																
근로자																
확인자																

확 인 자 : ○ ○ ○ (인)